

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나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 개정(2013/4/25 개정 · 4/29 시행)

1) 개정목적

- 단기과열종목지정제도¹⁾ 중 투자자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동 및 해제 요건 등을 일부 개선하고 단기과열종목, 정리매매종목 등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단일가매매를 하는 경우 자기주식매매 가격제한 기준을 명확화

2) 개정내용

자기주식매매 시 가격제한 기준 명확화(제57조)

-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단일가매매를 하는 경우 자기주식매매 가격제한 기준을 명확화
 -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자기주식매매 시 '최우선매수(매도)호가'를 기준으로 호가가격을 제한하나, 단일가매매시 '최우선매수(매도)호가'의 정의가 불명확
- 단일가매매에서는 실제 매매거래가 아닌 가체결 상태의 호가상황을 보여줌
 - 따라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우선매수(매도)호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, 체결된 것을 가정한 상태의 예상최우선매수(매도)호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불명확
- 이에 '최우선매수(매도)호가'를 '예상최우선매수(매도)호가'로 변경

주가 안정화 시 지정예고 및 지정제한(제133조 1항, 제133조의2 1항)

- 주가가 하락 · 안정화 추세로 전환된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투자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2012년 11월 5일 시행



- 이에 지정(지정예고) 여부 판단일의 증가가 전일증가 및 지정예고(최초적출) 판단일의 증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지정(지정예고)하도록 개선

시장경보제도와 지정 중복 최소화(제133조의2의 4항 5호)

- 단기과열 기준 및 시장경보 기준에 의한 적출 중복 최소화를 위해 투자경고(위험)종목 지정 종목은 단기과열요건 적출대상에서 제외
 - 투자경고(위험)종목으로 지정중인 종목은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요청을 한 경우에만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

지정해제 연기기간 축소(제134조 1항~2항)

- 계속·반복적인 지정해제 연기에 따른 투자자혼란 및 정상적인 주가상승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제연기 기간 축소
 - 기존 1일씩 최대 10일을 1회에 한해 3일로 개선
 - 134조 2항의 개정세칙 적용 시 세칙 시행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세칙 시행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함

나. 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 개정(2013/4/25 개정·4/29 시행)

1) 개정목적

- 단기과열완화장치 도입 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자기주식매매 호가수량 산정방식을 시장시스템 반영 기준으로 변경

2) 개정내용

자기주식매매 호가수량 산정방식 개선(제10조 1항 2호)

- 자기주식매매 호가수량 산정 시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경우 처리방식을 시장시스템 반영 기준에 따라 개선



- 시장시스템이 '절사'를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어, '절상'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체크절차를 거쳐 시스템에 입력
- 기존 '절상'하여 처리하던 것을 '절사'로 처리

단기과열종목 지정 및 지정예고 제외사유 확대(제28조의2 1항, 제28조의3 1항, 4항 5호)

- 주가가 판단일 전일에 비해 높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최초적출, 지정예고, 지정을 유예
-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경우 단기과열요건 판단 대상에서 제외

단기과열종목 지정해제 연장방식 개선(제28조의4 1항~2항)

- 지정해제가 1일씩 최대 10회까지 연장 가능함에 따른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정해제를 1회에 한하여 3일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

'매매거래일' 의미 관련 주의규정 삭제(28조의2 1항)

- '매매거래일'은 일반적으로 '시장의 매매거래일'을 의미하나, 28조의2 1항괄호에서 규정하는 주의규정으로 인하여 다른 조문상 '매매거래일'에 대한 반대해석의 우려가 있어 해당 괄호부분의 주의규정 삭제

연구원 이현정 (02-3771-0685, anet2@kcmi.re.kr)